#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12． 15.
행 정 소방위원회

## I．심사경과

> 1．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8년 11월 13 일 충청북도지사

2．회 부 일 자 ：2008년 11월 14일

3．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 5 차 행정소방위원회（2008．12．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질의•토론，심사의결（원안）

## ㅍ．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곽임근）

## 1．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으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bigcirc$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square$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bigcirc$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둥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

##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전문위원 윤영창)
$\bigcirc$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공무원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려 일부개정조려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절•공정) (1)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 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헌 행 | 개 정 안 |
| :---: | :---: |
| 제5조 (친절•공정) (1)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br> (2)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 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br> <신 설> | 제5조 (친절•공정) (1)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br> (2) (현행과 같음) <br> (3)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관 계 법 령 발 췌

$\square$ 지방공무원법
제 51 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 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